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웹 프록시 기능*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DMZ구간을 구성(공개용 웹서버는 내부통신망에 위치)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**를 위반 하는지 여부
	* 외부에서 받은 트래픽을 내부로 전달 **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판단이유	□ 공개용 웹서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,
	○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취약하여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는 등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고(감독규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),
	○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 하여 운영해야 합니다.
	□ 해당 네트워크 장비가 웹 프록시 기능을 갖춘다 하더라도 공개용 웹서버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요청대상 행위는 감독규정 제17조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.
	 또한, 웹서버를 내부망에 구축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요청 업무를 내부통신망에서 처리하는 것은 보안상 허용하기 어렵습니다.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